

Monthly Tax Newsletter

Issue 131 | May 2025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KC

Contents

법인세법

4

- [심판례]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 [심판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 [예규]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 [예규]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9

- [심판례]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 [예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 [예규]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12

- [예규]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예규]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 시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14

- [예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5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증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국승)
- [판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국승)
- [판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 [예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기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국세기본법

22

- [판례]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승)

지방세법

24

- [예규]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

법인세법

[심판례]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경정) 조심 2024서2136, 2025. 3. 18.

[사안] 청구법인은 연, 아연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1. 10. 5. 당초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100조의 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쟁점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 이와 별개로 청구법인의 2016~2020사업연도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쟁점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2022. 4. 1. 청구법인에게 과소납부한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으며, 2022. 6. 7. 청구법인의 쟁점경정청구를 받아들여 법인세(“쟁점환급세액”)를 환급하였음. 청구법인은 2022. 9. 5. 2018~2020사업연도의 법인세는 쟁점세무조사에 의해 증액경정 되었다가, 쟁점경정청구에 의해 다시 감액경정 되었으므로,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가산세(“쟁점가산세”)를 환급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고, 가산세는 본세의 산정방법과 달리 거래금액·산출세액·외형금액·미납금액 등에 일정한 비율 등을 곱하여 산정되는 등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부과처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7064 판결), 쟁점가산세 중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쟁점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전가격조정, 과다경비 부인, 수익·비용 귀속시기 오류 등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법인세 신고 시에 포함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것이므로, 이후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방법의 변경에 따른 경정청구로 인해 쟁점환급액이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항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의 감액경정이 선행되어 증액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달한다는 사유를 들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가산세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에 이르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환급해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쟁점가산세 중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르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산식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가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정당한 법인세액은 법인세법상 납부세액을 의미하고, 법인세 납부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초로 계산되는데, 이때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에 조특법 제100조의 32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포함하여

[판단]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상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건의 경우 과소납부한 세액은 없는 점, 청구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소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다납부를 한 결과, 법인세 전체에 대한 정당한 납부세액이 같거나 이를 넘어서는 경우에 과다납부한 부분은 무시하고 과소납부한 부분만을 들어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불합리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중 납부지연가산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코멘트]

-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는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결정·경정 규정을 두고 있었음.
- 과거 대법원은 구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에 자산의 양도 및 세액 계산에 관련된 해당 항목을 모두 공란으로 남겨둔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무신고)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음(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두0681 판결). ☞ 특별부가세를 별도의 과세단위로 봄.
- 2001. 12. 31. 법인세법 개정 시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현행과 같이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도록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였고,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동일한 구조로 조특법 제100조의 32(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서 규정하고 있음.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구분되는 별도의 과세표준 신고·납부·결정·경정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국세청은 현행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정하는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 X)가 적용된다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21-징세8026, 2022. 1. 18.).

[심판례] 청구법인이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특수관계 외국법인으로부터 저가현물출자 받아 청구법인이 저가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내원천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소) 조심 2022서7930, 2025. 3. 31.

[사안] 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국제특송화물운송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의 완전 자회사로서 미국법인인 B사로부터 2018. 4. 1. 국내 비상장 C사(유한)의 지분 100%(12만주, “쟁점지분”)를 달러(“쟁점현물출자액”)로 평가하여 현물출자(“쟁점현물출자”)를 받았고, 쟁점현물출자액 전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처리하였음. B사는 2018년 5월 쟁점현물출자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C사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년 8월경 처분청에게 ‘증권거래세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처분청은 B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수증이익(“쟁점수증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쟁점조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원천징수분 법인세 등을 결정·고지하였음.

[판단]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의 ‘증여’는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포함되는바, 외국법인인 청구법인은 쟁점지분을 현물출자받고, 그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의 자본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차액(쟁점수증이익)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법인세법상 증여에 대한 별도의 정의조항 내지 준용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증여’의 개념을 무조건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국조법에서의 ‘자산의 증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호에서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괄호에서는 “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수증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에서 규정한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처분청은 쟁점수증이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다면 추후 자산의 양도시점에 청구법인에게 과세는 불가능하므로, 결국 대한민국 스스로 과세권을 포기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쟁점현물출자는 외국법인간의 거래로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당시 청구법인 등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룹의 지배구조 변경을 통한 관리·운영의 단순화 및 법률적 위험의 단절을 목적으로 실행된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으로는 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그 주식을 처분할 때 당초 양수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판단] 과세되는 것인데,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에서 과세권을 행사하
 _계속_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는 각 국가 간
 의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과 관련된 것으로서, 달리 조세형평에 어긋나거나 조세주권 침해
 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다목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2중
 2748, 2024. 10. 3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코멘트]

- 국세청은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로부터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출자 받고 신주를 발행함
 에 있어 현물출자 받은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교부하는 신주의 발행가액과의 차이는 법인세법 제93
 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국제세원관리담당관
 실-593, 2011. 12. 30.).
- 한편, 기재부는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완전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현물출자 받
 은 경우 저가양수차액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국제
 조세제도과-240, 2021. 5. 31.).

[예규]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024-법인-3684, 2025. 4. 7.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코멘트]

- CA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와 달리 특정 온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특수 컨테이너로 신선식품, 의약품 등 운송에 주로 사용됨.
- 과거 국세청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컨테이너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 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한다고 해석한 바 있음(법인46012-2203, 1999. 6. 9.).

[예규]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의 감가상각 가능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21, 2025. 4. 16.

해외자원개발 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2025. 2. 28. 대통령령 제35350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 제2호 차목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임.

[코멘트]

- 기재부는 석유탐사단계에서 지출된 탐사사업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2호의 광업의 탐광비에 해당되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255, 2020. 2. 17.).
- 2025. 2. 28.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시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를 위하여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제1항 제2호 차목에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자산과 유사한 무형자산”을 신설하여 법인령 제26조(상각범위액의 계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무신고 시 5년 균등상각, 법인령 제26조 제4항 제6호)을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심판례] 설립 후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지 않은 청구법인이 독립성 기준이 해소된 이후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가 2021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소)

조심 2025부0057, 2025. 4. 23.

[사안] 청구법인은 2001. 12. 20. 설립되어 철강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0. 3. 2. A사가 청구법인의 지분을 인수(지분율 51%)함으로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었고, 2013. 4. 19. A사가 보유지분 전부를 매각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되었음. 이후, 청구법인은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제2조 제2항 중소기업 유예규정에 따라 중소기업공제율(10%)을 적용하여 통합투자세액을 공제받았고, 2022. 8. 3.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 9. 30. 청구법인에게 해당 법인세를 환급하였음.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중소기업 유예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1사업연도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공제율 및 공제금액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함.

[판단] 처분청은 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조특령 제2조 제2항 본문에서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로 해석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은 이미 2010~2012사업연도 동안 독립성 기준을 위배하여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매출액 규모기준도 2010~2013사업연도 동안 초과), 2019사업연도에 다시 매출액 규모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된 것인바 청구법인에게 2021사업연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특령 제2조의 주요 개정 이력을 보면, 2000. 12. 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반복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유예기간을 “1회에 한하여” 부여하도록 개정되었고, 2010. 12. 30. 유예기간 중에 중소기업→일반기업→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잔존 유예기간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최초로”로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2012. 2. 2. 중소기업 규모·졸업기준 판단 시 관계기업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중소기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을 반영하였고, 2015. 2. 3. 관계기업 합산매출액 초과 시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완화하면서 조특령 부칙 제4조에서 2015. 1. 1. 이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개정되어 왔는바, 특히 2000. 12. 29. 및 2010. 12. 30.의 개정 내용에 따르면 이는 종전의 중소기업 졸업횟수, 사유, 유예기간 적용배제와는 무관하게 법인설립 후 1회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유예기간의 재차적용은 불허)하도록 한 취지로 보이므로, 조특령 제2조 제2항 본문의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은 최초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사유(매출액 규모기준 초과 등)가 발생한 때로 해석함이 타당한 점(조심 2024중1912, 2024. 7. 8.,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종전에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코멘트]

- 기재부는 중소기업이었던 법인이 독립성 기준 미충족으로 유예 없이 비중소기업이 되었다가 다시 중소기업이 되었고, 이후 매출액 증가로 비중소기업이 된 경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조특령 제2조 제2항)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중소기업 졸업 이후 재차 중소기업이 된 법인에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회신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71, 2024. 5. 3.).

[예규] 공동사업장에서 단독사업장이 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방법
 기준-2024-법규소득-0121, 2025. 4. 9.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이 공동사업자 간 지분승계를 통해 단독사업장이 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3항 제3호에 따른 계산은 탈퇴한 공동사업자의 매월 말 상시근로자를 단독사업장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코멘트]

- 기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명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 1. 15.).

[예규] 임직원들이 회사 직영 온라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3287, 2025. 4. 24.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법인이 임직원들에게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배정하고, 임직원들이 포인트로 상품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 온라인몰에서만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고 지급한 포인트는 인정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에 반영함.
-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급받은 경우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7, 2007. 4. 30.), 임직원 전용 쇼핑몰에서 임직원이 회사에서 부여한 복지포인트로 쇼핑몰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쇼핑몰사업자는 복지포인트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사에 청구하여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쇼핑몰사업자가 임직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음(전자세원과-652, 2009. 10.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예규] 내국법인이 브라질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JCP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24-법규국조-0218, 2025. 3. 18.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브라질 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브라질 세법상 이자로 취급되는 JCP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고, 브라질 법인이 해당 JCP를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시 비용으로 공제하였다면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적용 대상이 아님.

[코멘트]

- JCP는 브라질세법에서만 특별히 규정된 개념으로 브라질법인이 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일정 한도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여 투자자(주주)에게 JCP형태로 지급할 경우 법인세 계산 목적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브라질은 주주의 일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있으나 JCP는 현지 세법상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율 15%를 적용하여 원천세를 부과하고 있음.
- 과거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 법인으로부터 브라질세법에 따른 JCP 명목으로 지급받은 소득의 구분은 동 지급액의 지급 형태 및 내역, 원천지국 세법 및 관련 법등의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서면-2017-법령해석국조-3290, 2018. 11. 23.).  해당 국세청 예규는 대상예규에 따라 삭제됨.

[예규]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CFC규정 적용 시 실제 부담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국조-0250, 2025. 4. 28.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해당 납부세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의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코멘트]

- 국조령 제62조(실제부담세액의 범위)는 실제부담세액은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 사업연도에 실제로 부담한 세액을 합계한 액수의 연평균액으로서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 세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후단에서 실제로 부담한 세액은 그 외국법인의 세전이익에 대한 조세를 말하며, 해당 거주지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과 이월결손금 공제로 인한 감소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내국법인(질의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네덜란드 법인(“외국법인”)은 카자흐스탄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카자흐스탄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지점세를 납부하고 있는데, 해당 지점 소득은 외국법인의 당기순이익에는 포함되지만, 네덜란드 세법상 면제규정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에서는 제외됨. → 질의법인은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국조법 제27조) 규정 적용 관련하여 외국법인의 지점이 지점 소재지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이 국조령 제62조에서 규정하는 실제부담세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소득세법

[예규]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2413, 2025. 4. 2.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코멘트]

- 대상예규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질의법인은 질의법인을 존속법인으로 하고 A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되었고, A법인이 질의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A법인의 주식을 교부한 경우 질의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한 A법인의 주식은 할증평가대상인지에 관하여 질의한 것임.
- 기재부는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증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음(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 9. 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 및 같은 항 각 호 외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은 모두 상속세법 제45조의 3에서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개념이 준용되므로 간접주주의 주식보유비율도 포함됨 (국승)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두63953 판결(심리불속행)

[사안] 원고는 A법인의 지분을 39.36%보유하고 있고, A법인은 B법인(“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11.22% 보유하고 있음. A법인과 이 사건 법인의 지분을 각 51.83%, 15.82%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아버지는 2018. 5. 9. 이 사건 법인에 A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증여하였음(“이 사건 주식증여”). 원고는 2019. 7. 1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5에 따라 이 사건 주식 증여 당시 A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을 평가한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2021. 6. 28. 이 사건 주식 증여가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존에 신고·납부한 증여세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함(“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을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은 “법인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이 제2호의 이익(“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그 지배주주 해당 여부는 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은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3 제1항의 “지배주주”의 의미를 구체화하면서,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의미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및 제34조의 4에서의 “지배주주”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에 관한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4 제1항은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의 의미는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와 마찬가지로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3 제1항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한편, 위 규정에서 “지배주주등”의 의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리고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5항은 “법 제45조의 4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4에서 “지배주주등”)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의미는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에서의 “지배주주등”의 의미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앞서 본 각 규정의 문언 내용들을 종합하면,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3 제1항, 제45조의 4 제1항,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가 규정하는 “지배주주”의 의미는 모두 구 상속세법 제45조의 3 규정에

[판단] 따르는 것으로서, 그리고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4, 위 규정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3 제5항,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4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지배주주등”은 모두 “지배주주와 그 친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일한 의미와 내용을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그 주식보유비율의 판단은 당해 주주와 그 친족이 보유한 직·간접 보유 주식을 불문하며(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 참조), 직접보유 비율의 계산에 있어서는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에서 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 나머지를 분모로 하여 계산하여야 하고(구 상증세법 제45조의 3 제1항 본문의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제1항 제1호 참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과 거래가 해당 규정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증여이익은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하게 됨. 그렇다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3호의 “주식보유비율”의 의미는 모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코멘트]

- 2019. 12. 31.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상증세법 제45조의 5, 상증령 제34조의 4)의 개정 이전에는,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보유비율도 포함된다고 명확하게 밝힌 바 있음(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23, 2022. 7. 28.; 조심 2022서5695, 2022. 11. 23. 참조).
- 2019. 12. 31. 개정 시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에는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시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고 개정되었음.  기재부와 조세심판원은 해당 규정을 확인적 규정으로 볼 것임.
- 1심은 2015. 12. 15. 상증세법 제45조의 5 개정 시 법인세와 증여세 세율의 차이를 이용한 탈법 증여행위까지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법인에 ‘그 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이 추가되었고, 당시 개정법률안 및 검토보고서에서는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를 예시적 성격의 규정에서 증여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증여의제이익을 특정법인의 이익에 해당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함을 명확히 한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고, 간접주주까지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 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비율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4. 1. 12. 선고 2023구합55665 판결), 원심은 1심판결을 취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4누33282 판결), 대법판결은 원심을 수긍함(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제4조 제4항 전단의 적용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2두42228 판결

[사안] 원고는 2016.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의 총 발행주식 20만 주 중 A가 18만주, B(원고의 배우자)가 나머지 2만주를 보유하고 있었음. 이 사건 회사는 2016. 7. 29.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 사건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원고와 C는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하고 각각 30만주(“이 사건 주식”)와 10만 주를 인수하였음. 그런데 원고와 A, B 사이에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인수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고자 원고와 A는 2016. 10. 12. 경 “이 사건 회사의 증자대금 2억원에 대하여 계약과 동시에 2억원을 지급하고 A는 주식을 양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합의를 하였으며(“이 사건 합의”), 원고는 같은 날 A로부터 2억원을 지급받았음. 피고는 2019. 3. 6. 이 사건 주식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사건 과세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이 사건 과세조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구 상증세법은 제4조 제4항 전단에서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이 사건 비과세조항”), 제2조 제7호에서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법」 제418조 제1항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기존 주주만이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법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기존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배정하게 되면 법인의 지분비율에 변화가 생기고, 기존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어 새로이 주주가 된 제3자에게 기존 주주의 부(富)가 이전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과세조항의 입법취지는 위와 같이 신주를 저가에 발행한 법인의 기존 주주로부터 신주인수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자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는 점,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2항은 이 사건 과세조항 등을 적용할 때 이익을 증여한 자가 소액주주로서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익을 증여한 소액주주가 1명인 것으로 보고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한 자가 신주발행 법인의 기존 주주임을 전제로 한 규정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조항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은 ‘기존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증자에 따른 이익’이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증여자인 기존 주주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이 사건 비과세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식대금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인 2016. 12. 31.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가 아닌 D, E에게 인수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코멘트]

- 원심은 “원고가 2016. 10. 12.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1인 주주인 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비과세조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이 사건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가 제3자 배정방식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주주로부터 분여 내지 증여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2. 3. 30. 선고 2021누46096 판결).
- 대법판결은 이 사건 과세조항이 규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을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지 않으나,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수긍함.

[판례]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납세자승)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두30806 판결

[사안] 원고는 총회장 A가 1984. 3. 14. 기독교 복음전도 및 선교 등을 목적으로 과천시에 설립한 기독교 종교단체이며, 총회 본부 산하의 12지파로 구성되어 있고, 12지파 아래에는 각 지파에 속한 국내 77개, 해외 74개의 지교회가 있음. 원고는 2001. 2. 20. 미국에 LA 교회를, 2013. 9. 26.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남아공 교회(이하 두 교회를 통틀어 “이 사건 교회들”)를 설립하였고, 2012부터 2017 사이 이 사건 교회들에 금원을 송금하였음(“이 사건 송금액”).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교회들에게 이 사건 송금액을 송금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제2조 제6호의 ‘증여’에 해당하고, 증여자인 원고는 구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교회들이 납부하지 않은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원고에게 이 사건 송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사건 처분”).

[판단] 구 상증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익법인 등’을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제1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제1호)을 비롯하여 공익법인 등의 사업 유형을 열거하고 있음. 구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1항은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인지를 가리지 않고 증여세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되, 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비거주자에 관하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을 증여세 납부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구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7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으로 보고(제1호) 그 외의 경우에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제2호) 구 상증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조의 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음.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음.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코멘트]

- 원고(청구법인)는 전심절차에서 과세당국이 오랜 기간 동안 국내 종교단체가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은 비과세관행에 반한다고 주장한 바 있음(조심 2021중2442, 2021. 2. 17.).
- 조세심판원은 위 청구법인의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송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해 보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해외 종교단체에 출연한 재산을 과세관청에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 만약 없었다면 과세를 하지 아니한 이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나, 피고(처분청)는 재조사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처분을 유지하였음.

[예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개인기업의 대표자로 취임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3, 2025. 5. 21.

피상속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기업의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증령”) 제15조 제3항 제2호 후단에 따라 상속인의 배우자가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코멘트]

- 상증령 제15조(가업상속) 제3항 제2호는 가업상속공제 시 상속인의 요건을 열거하면서 후단에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있으며, 라목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하던 개인기업을 상속인 1명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가 해당 개인기업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 상속인은 구 상증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2호(☞ 현행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 구 상증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4, 2016. 10. 25.).

국세기본법

[판례]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국승)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두65911 판결

[사안] 1989년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원고는 서울 용산구 다가구주택(“이 사건 주택”)을 2016. 10. 7.에 양도하고(“이 사건 양도”), 2016. 12. 30. 양도소득세를 예정 신고·납부하였음. 원고는 2017. 4. 10. 경 서대문세무서장에게 자신이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 2 제1항 제1호가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주택이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제95조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2. 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 제160조 제1항(“고가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1차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서대문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함. 그 후 원고는 2017. 12. 28. 서대문세무서장에게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같은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2차 경정청구”)를 하였고, 서대문세무서장은 원고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관청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이를 이송하였음. 원고는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3431호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 처분 취소의 소(선행소송)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용산구청장)는 2022. 4. 18.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결정·고지 후 이 사건 주택의 취득가액을 경정하여 감액 경정·고지함(감액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

[판단] 국세기본법 제44조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과세관청이 어디인지는 그 결정 등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나아가 부동산 양도소득 등과 같이 조세조약에 의하더라도 원천지국인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에 대한 국세의 과세관할 또는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국세기본법 제44조 등 국내세법에 따라 정해짐.

원심은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 당시에도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한·호주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음,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이 사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과세관할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원심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과세관할이 어디인지를 판단한 부분과 한·호주 조세조약에 따라 원고가 호주 거주자로 간주된다는 것까지 과세관할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부분은 다소 부적절하나, 이 사건 처분이 과세관할권 없는 피고가 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옳음.

[코멘트]

- 1심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2016. 10. 31.)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당시 원고가 구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구 소득세법 제5조 제2항 본문에서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가 용산구이고,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의 각 호실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조세관할권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서울행정법원 2024. 4. 17. 선고 2023구단62437 판결).
-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시점에 관한 심급별 요약: (i) 1심= 납세의무 성립 당시, (ii) 원심= 납세의무 성립 당시 또는 처분 당시, (iii) 대법판결= 처분 당시

지방세법

[예규] 결손처분 취소 및 취소통지 없이 한 체납처분의 효력
지방세정책과-960, 2025. 3. 17.

결손처분 취소나 취소통지 없이 실시한 체납처분(압류)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위법하나, 그 사실만으로 이 건 압류를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압류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시효중단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코멘트]

-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압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그 사실이 체납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것만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압류가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다301688 판결). ☞ 대상예규는 대법원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보임.

삼정회계법인 세무본부

Tax Knowledge Center

Key Contacts

이재호

부대표(센터장)

T. 02.2112.0520

E. jlee315@kr.kpmg.com

이윤영

Director

T. 02.2112.7037

E. yoonyounglee@kr.kpmg.com

오혜주

S.Manager

T. 02.2112.0954

E. hoh7@kr.kpmg.com

주미현

S.Manager

T. 02.2112.4602

E. mihyunjoo@kr.kpmg.com

우진욱

S.Manager

T. 02.2112.7802

E. jwoo6@kr.kpmg.com

박재현

Manager

T. 02-2112-6596

E. jpark99@kr.kpmg.com

주정연

Manager

T. 02-2112-7038

E. jungyeonjoo@kr.kpmg.com

김솔

Staff

T. 02.2112.7906

E. solkim@kr.kpmg.com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u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5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